##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21

발의연월일: 2025. 2. 17.

발 의 자 : 홍기원 · 문진석 · 허 영

강선우 · 김교흥 · 정을호

박상혁 • 한민수 • 윤종군

복기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공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수요자가 주택구입자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거나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이주비 등을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금리에서 시중 대출 이자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금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금의 용도에 주택구입자금·임차보증금 및 공공재개발사업의 이주비 등 대출에 관한 이차보전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9호·제2항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보증금 대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이차보전(利差補塡)
-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 개발사업의 이주비 등 대출에 관한 이차보전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	제9조(기금의 용도) ①			
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9.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보증금			
	대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이차			
	보전(利差補塡)			
<u>9.</u> (생 략)	<u>10.</u>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2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의 이주비 등			
	대출에 관한 이차보전			
<u>6.</u> (생 략)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